

제293회  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#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

2020. 4. 3.

**서울특별시교육청**

안녕하십니까?

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,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## 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##### ○ 소셜 미디어의 출현 등

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당해 조례의 활성화 대상인 홈페이지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등으로 확대하여,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서울교육 정책에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질 높은 서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

#### □ 관련 법규는

- “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”를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한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 4호 (나)목입니다.”
- 이와 관련해서 안 제7조에 근거한 이용자 참여행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. 별첨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우선,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였고
- 안 제2조에서 “인터넷 매체”의 정의를 신설하고 다른 정의들도 간결히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1조, 안 제3조 내지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10조에서 운영 활성화 대상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였고
-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”에 맞춰 용어, 어색한 표현,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.

□ **그 외 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**

**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**

**감사합니다.**